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51627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 2024. 10. 16.

판결 선고 2024. 11. 27.

주 문

- 피고와 D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5. 2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7,976,19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7,976,1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D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3886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3. 'D는 원고에게 29,526,205원 및 그중 8,263,670원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다시 D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790457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9. 7. 'D는 원고에게 3,263,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은 2022. 9.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 F 사망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5.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G, H, C, D, 피고(상속 지분 각 1/5, 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있다.

2) 공동상속인들은 2019. 5. 28.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6. 12. 접수 제126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21. 6. 23.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7. 13. 접수 제19696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의 무자력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이 D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D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2, 8, 9,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창군수, 강릉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선행판결이 확정된 2022. 9. 30. 무렵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있었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그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24. 4. 15.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선행판결이 확정된 2022. 9. 30. 무렵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24. 4. 15.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룰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D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룰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D는 무자력인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D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기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D의 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당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8012 판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형제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채권자의 위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D의 상속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이전해주었고, 달리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법률상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시가가 55,500,000원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11,100,000원($= 55,500,000\text{원} \times 1/5$)이다. 한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7,976,195원은 원고의 양수금 채권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취소는 7,976,19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976,1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김민정

별지

1) 시가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된 것은 아니나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액수를 시가로 보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